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66호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1. 제안 이유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의2).

나.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의3).

다. 운영세칙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1조의4).

###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회장(참조 : 산업  
건설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32, FAX 042-270-5049, E-mail : lms1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4. 개정 조례안 : 붙임

##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의3과 제2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의4(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 ⑦ (생략)</p> <p>⑧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2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p> <p>②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p> <p>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p>	<p>제21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제2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p>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p> <p>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p>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p>&lt;신 설&gt;</p>	<p>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제21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li> <li>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li> <li>3.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li> <li>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lt;신 설&gt;</p>	<p>제21조의4(운영세칙) 이 조례에서</p>

	<p><u>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u> <u>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u> <u>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	---

## 관 계 법 령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34조(도시재정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소속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3.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38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1.30, 2014.1.16>

1. 특별시의 경우 : 행정(2)부시장
2. 광역시의 경우 : 행정부시장
3. 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
4. 도의 경우 : 행정부지사
5.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부지사
6. 대도시의 경우: 부시장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각각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0.4.13, 2011.11.30>

1.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 지방의회의 의원
2.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 소속 공무원 및 도시재정비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
4. 도시계획·도시설계·도시디자인·건축 및 주택 등 도시재정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도시재정비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1.30>

⑩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11.30>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의 원 명 단

연번	의원명	서명	비고
1	원기영	원기영	
2	전문학	전문학	
3	정기현	정기현	
4	권영호	권영호	
5	김동성	김동성	
6	박상욱	박상욱	
7			
8			
9			
10			
11			
12			
13			
14			
15			